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4월 6일(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0년 4월 9일(금)

4. 제정근거

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09.12.10 시행 법률 제9774호) 제15조

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 1. 1 시행 대통령령 제21904호) 제10조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 유도 및 환경오염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0 본 조례안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규정하였으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사목에 보면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原劑)도 오염물질에 포함되며 「농약관리법」은 소관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니므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금제도 운영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지자체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신고사항 뿐 아니라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에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하 조항에 다른 별표가 없으므로 “별표 1”을 “별표”로, 안 제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각각 수정을 요함.

안 제7조제1항 중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위원을 소관국 과장급으로 규정하였으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타 부서도 있으므로 소관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고포상업무 팀장”은 “신고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표 1의 제2호에서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의 지급율은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로 규정하였으나 환경부 예규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의 지급율 기준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퍼센트”로 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의 지급율은 상급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제5호나목 중 “상금”은 안 제6조제1항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은 “포상금”으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포상금”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u>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u></p> | <p>제4조(접수 및 처리) ----- ----- ----- -----<u>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u>----- ----- -----.</p> |
| <p>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6조(포상) ①----- ----- ----- <u>별표</u>----- ----- -----.</p> |
| <p>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u>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u> 2. ~ 4. (생략) 5. 다른 <u>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u> 6. ~ 9. (생략)</p> | <p>1. ----- -----<u>경찰공무원 등이</u>----- ----- 2. ~ 4. (원안과 같음) 5. --- <u>법령 등에</u> ----- ----- 6. ~ 9. (원안과 같음)</p> |
| <p>② <u>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 <p>② <u>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
| <p>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u>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4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 <p>③ ----- ----- ----- -----<u>별표의 제5호</u>----- -----.</p> |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u>신고포상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 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u></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팀장이 된다.</u></p> <p>⑤ ~ ⑥ (생략)</p> | <p>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u>-----.</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 <u>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이</u> ----- -----.</p> <p>④ ----- ----- ----- <u>담당팀장</u> -----.</p> <p>⑤ ~ ⑥ (원안과 같음)</p> |

| 원 안 | 수 정 안 | | | | | | | | | | | | | |
|--|---|----------------------------|-------|-----|--------------|---------------|----------------------------|---------------|-------|-----------------------------------|------|--------|------|--------|
| <p>[별표 1] <u>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 (생략)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생략) 3. ~ 4. (생략)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생략)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p> | <p>[별표] <u>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6조 관련)</u></p> <p>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포 상 금</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역형 (금고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 300만원</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미만 - 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벌 금 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고유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 2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소유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 10만원</td> </tr> </tbody> </table> <p>2. (원안 제1호와 같음)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퍼센트 나. (원안 제2호 나와 같음) 4. ~ 5. (원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원안 제5호 가와 같음)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p> | 구분 | 포 상 금 | 비 고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벌 금 형 |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신고유예 | - 20만원 | 기소유예 | - 10만원 |
| 구분 | 포 상 금 | 비 고 | | | | | | | | | | | |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2년 미만 - 200만원 | | | | | | | | | | | | | |
| 벌 금 형 |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 | | | | | | | | | |
| 신고유예 | - 20만원 | | | | | | | | | | | | | |
| 기소유예 | - 10만원 | | | | | | | | | | | | | |

관 계 법 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15조 (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제10조(상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받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9>